

##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8. 4. 6.

총무재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3월 23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3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5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('98. 4. 6.) 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신 귀 철

가. 개정이유

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 및 전결관련 자치법규의 명칭 혼용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혼란이 초래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로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개정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로 명칭 개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도록 규정된 동 조례안의 제명이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혼란은 물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

법 제95조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등 조례안의 제명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지난 '9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제명도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 공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199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 및 전결관련 자치법규의 명칭 혼용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혼란이 초래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로 개정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로 명칭 개정.

### 3. 관련법규

지방자치법 제15조

### 4. 참고사항

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행정권한”을 “사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형	개 정 안
(제명) ○서울특별시마포구청권한위임조례	○ . . . . . 사무 . . . . .